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재임기간에 관한 연구

김 동 열*, 한 상 범**

<目 次>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 선행 연구
- III. 연구범위와 방법론
- IV. 제도적 분석: 제도변화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상과 지배구조 변화
- V. 기술통계적 분석
- VI. 재임기간에 대한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 VII. 분석 결과 및 한계

<요 약>

본 논문은 1950년5월부터 2010년4월까지 지난 60년 동안 금융통화위원회에 재임했던 200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대통령에 따라 위원의 임명과 재임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금융통화위원회에 관한 제도 변화는 위원의 임명과 재임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재임기간에는 주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제도적 분석과 기술통계적 분석,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한 생존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출신지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출신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등 대통령 인사의 정실주의 특성이 일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은 1997년12월의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이 초래한 제도변화였다. 1998년 이후 재임기간은 그 이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길어졌으며, 임기만료 후 퇴임하는 비율도 김대중 정부 65%, 노무현 정부 89%로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교수출신, 중앙은행추천, 호남지역출신인 경우 상대적으로 그리고 유의하게 재임기간이 길었으며, 정치인출신 위원의 경우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짧았다.

【주제어: 금융통화위원회, 재임기간, 생존분석】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donykim@empal.com).

**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sbhahn@kgu.ac.kr)

논문접수일(2010.7.19), 수정일(2010.9.14), 게재확정일(2010.9.19)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2010년 6월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창립된 지 60년이 되었다. 60년전에 발표된 창립선언문에는 정치적 중립성, 기술적 전문성, 기동적 자치성 3가지가 조직의 핵심 운영 원칙¹⁾으로 천명되어 있으며,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한국은행법에 명시되어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세계 47개국 중앙은행의 지배구조와 운영 현황을 조사한 BIS(2009)²⁾ 보고서에서도 지배구조, 임면 절차, 임기의 길이와 교체 주기 등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며, 한국은행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논란은 창립 60주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10년 4월의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의 정치적 중립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는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명에도 대통령 인사의 정실주의 성격(patronage concern)이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절한 것인지, 과거 60년간의 실상을 살펴보고 원인과 대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법에서 정한 임기를 못 채우는 경우가 많은지, 언제부터 임기만료 후 퇴임의 비율이 높아졌는지, 재임기간의 장단(長短)과 임기만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속성적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극증을 실증분석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한 7명의 위원이 2010년 4월을 마지막으로 모두 법정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는데, 이는 위원의 개인적 특성에 좌우된 것인지, 후임 대통령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제도변화의 결과인지 궁금하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이 어떤 특성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위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있어서조차도 대통령 인사의 정실주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이나 정권의 교체에 의해 위원의 교체가 자주 이뤄지는 등 법에서 정한 임기가 유명 무실한 것은 아닌지, 법정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하는 위원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최근 임기만료의 비율이 높아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이나 이념적 성향과 위원의 임명 그리고 재임기간은 어떤 관계가 있는

1) 한국은행 구용서(具鎔書) 초대 총재의 “韓國銀行 創業에 際하여”(1950년6월12일) 중에서 인용.

2) BIS, “Issues in the Governance of Central Banks”, 2009

지,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토대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³⁾ 제고에 기여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1950년 6월 설립된 이래 60년 동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2007년 말까지 임명된 위원 200명의 인사 자료에 기초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관한 인사 실태를 객관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향후 대통령의 국정관리(presidency)와 인사행정에 관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II. 선행 연구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하여 대통령의 인사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인사행정의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임명, 임면의 특성, 재임기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면과 재임기간 분석에 참고하기로 한다.

대통령의 정치적 임명(political appointment)에 관하여 Nathan(1975, 1983, 1985)은 ‘행정적 대통령’(administrative presidency) 이론을 선구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즉, 정치적 임명이란 관료제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정책목표에 대한 관료제의 반응성(responsiveness)을 제고시키며, 대통령의 정책의도를 관료제 및 정책과정 속에 내부화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Moe(1985)는 레이건 대통령의 행정부에 대한 적극적 통제를 예로 들면서, 대통령이 참모기구를 중앙 집권화(centralization)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정치적 임명을 확대하는 정치화(politicization)가 필요하다는 제도적 대통령(institutional presidency)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Lewis(2009)는 정치적 임명이 많았던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2005년 9월 태풍 카트리나에 능장 대처하여 피해를 더 키웠던 사례를 들면서, 정실(patronage concern)에 입각한 행정부의 정치화가 오히려 행정부 통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대식(2007)은 Moe(1985, 1989)의 제도적 대통령 이론에 입각하여, 미국과 한국 모두 분점정부 하에서 대통령

3) 한국은행법 제3조에 따르면, “韓國銀行의 通貨信用政策은 中立의으로 수립되고 自律의으로 執行되도록 하여야 하며, 韓國銀行의 自主性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국은행 창립 선언문에는 “政治的 中立性과 技術的 專門性, 機動的 自治性”이라는 3가지 운영 원칙이 천명되어 있다. Lastra(1996), 정운찬(1997), BIS(2009) 등에도 중앙은행의 정치적 중립, 전문성, 상근(full-time), 충분히 긴 임기 등을 강조하고 있다.

비서실과 내각에 정치적 임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참모기구의 중앙집권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관의 임명기준에 관한 행정학적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장관의 임명기준에 관한 연구는 박천오(1995), 김순양(1996), 김호균(2002), 민병익(2004), 정광호 외(2007) 등이 있으며, 장관의 역할과 자질에 관한 연구로는 이종범 외(1994), 김광웅(1994), 이선우·박충훈(2000), 김호균(2001) 등이 있다. 그리고 장관의 인구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로는 양성철(1994), 안병만(2001), 박종민(1996), 김호균(2001), 정광호 외(2007) 등이 있으며, 장관의 재임기간에 관한 연구는 박천오(1995), 안병만(2001), 김호균(2002, 2004), 안병영(2001), 이시원(2002), 이시원·민병익(2002), 정광호 외(2007) 등이 있다. 장관의 교체사유에 관해서는 김호균(2002), 이시원(2002), 정광호 외(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장관을 비롯한 정치적 피임용자(political appointees)의 재임기간을 다룬 연구는 박천오(1995), 안병만(2001), 김호균(2001, 2004), 안병영(2001), 이시원(2002), 이시원·민병익(2002), 정광호 외(2007) 등이 있으며, 해외의 연구는 Cohen(1986)과 Lewis(2003)를 들 수 있다.

이시원(2002)은 우리나라 장관들의 재임기간이 박정희 정부에서 가장 길었고, 김대중 정부로 올수록 재임기간이 짧아지며, 특정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외무부와 과학기술부, 국방부의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내무부, 농림부, 건교부 등은 짧은 부처에 속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잦은 교체는 장관들이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기 어렵게 하고 관료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도 쉽지 않게 하여, 오로지 정치적 입지에만 관심 갖게 만든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광호 외(2007)는 이승만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07년4월)까지의 장관급 인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재임기간을 분석하였다. 정광호 외(2007)에 따르면, 분석대상 국무위원 877명의 평균재임기간은 427.8일이었으며, 평균임기는 제3공화국 650일, 제4공화국 567일의 순이었고, 중위수를 기준으로 하면 제3공화국 517일, 제5공화국 502일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정광호 외(2007)는 군사정권 하에서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며, 제5공화국 이후 장관임기의 감소는 민주화 이후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장관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이 높아진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의 장관 재임기간 연구는 사실과 현상을 충실히 요약하고 정리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본 논문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에 관하여 생존분석 기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시도했으며,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Cohen(1986)은 1952년부터 1984년까지 미국의 장관을 비롯한 고위 정부직을 대상으로 간단한 선형회귀분석(OLS)모형⁴⁾을 활용하여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장관 개인과 관련된 특성⁵⁾인 출신 직업, 나이, 정년퇴직여부 등은 재임기간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특성⁶⁾인 임기 초반 여부, 정권의 성공·실패 여부는 유의미하게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Lewis(2003)는 1946년부터 1997년까지 존속했던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agency)을 대상으로 존속기간(agency mortality)이 달라지도록 하는 요인들을 비례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즉 정치적 독립(political insulation)이 높아질수록 지속가능성(durability)이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Lewis(2003)의 연구는 공공기관의 존속기간에 관한 연구이긴 하지만, 이를 공공기관장의 경우에 응용하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공공기관의 기관장일수록 재임기간이 증가할 것이다”는 가설이 성립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금융통화위원회에 관한 행정학적 접근 자체가 많지 않지만, 많지 않은 연구의 대부분은 독립규제위원회로서의 금융통화위원회의 성격에 관한 연구,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요건에 관한 연구에 머무르고 있으며, 위원의 임명과 재임기간에 관한 인사행정 차원의 접근은 없었다.

독립규제위원회로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시도한 송영대(1965), 차성웅(1987)의 연구가 있었으며,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조직적·기능적 요건에 관하여 김재중(1987), 박신창(1988), 김창규(1989), 진영택(1990), 김진호(1995), 정운찬(1997)의 연구가 있었다. 중앙은행 제도 개편에 관하여 김태은(2002), 박진수·강득록(2003), 이방식(2006) 등의 논의가 있었다.

4) Cohen(1986)은 $Y=a + b1X1 + b2X2 + b3X3 + b4X4 + b5X5 + \dots + b11X11 + e$ 와 같은 모형을 활용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

5) 장관 개인의 특성이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Y =재임기간, $X1$ =관료출신, $X2$ =민간출신, $X3$ =변호사출신, $X4$ =관료로 복귀, $X5$ =민간으로 복귀, $X6$ =변호사로 복귀, $X7$ =교육계로 복귀, $X8$ =정년퇴직, $X9$ =임명당시 나이, $X10$ =최초 임명이나 교체 임명이나(통제변수), $X11$ =대통령의 임기가 초반인가 후반인가(통제변수), e = 오차항으로 구성되는 OLS모형을 설계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6) 대통령의 특성이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Y =재임기간, $X1$ =대통령과 장관의 출신지역 일치 여부, $X2$ =최초임명 장관의 여부, $X3$ =임기가 초반인지 여부, $X4$ =설립된 지 오래된 외부업무 부처, $X5$ =내부업무 부처, $X6$ =대통령의 실패 여부, $X7$ =반대당 출신, $X8$ =같은당 출신, $X9$ =대선캠페인에 참여 여부, $X10$ =첫째 임기나 두 번째 임기나(더미변수), $X11$ =대통령과 장관이 같은 주 출신인지 여부(더미변수), e = 오차항으로 구성되는 두 번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히 정운찬(1997)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조직적·기능적·실질적 독립성이라는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에 관한 Lastra(1996)⁷⁾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Ⅲ. 연구범위와 방법론

본 연구는 이승만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및 위원을 역임한 200명(중복 임명된 경우까지 포함)의 인사를 분석대상으로 했으며, 분석기간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초로 설립된 1950년 6월부터 2007년 말까지⁸⁾이다. 중점 연구내용은 (1)금융통화위원회의 제도 변화, (2)역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및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명 현황, (3)퇴임사유, (4)재임기간 분석 등이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장과 위원에 관한 인적 사항과 퇴임 사유, 재임기간에 관한 자료는 『한국은행50년사』(한국은행, 2000)와 『조흥은행50년지』(조흥은행, 1957), 『대한민국인사록』(내외홍보사, 1949), 『한국 근현대사 인명록』(여강출판사, 1987), 『학술연구자 인명록』(한국학술진흥재단, 1988),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의 인물검색과 기사검색을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은 한국은행법과 금융통화위원회 제도에 관한 문헌조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인사 자료를 활용한 기술통계적 분석, 위원의 재임기간에 관한 생존분석 등 3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행정학적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관한 기술통계적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위원의 재

7) Lastra(1996)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조직적 독립성에 필요한 7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중앙은행구성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참가시켜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의 위(임)원들의 임기는 정치적 측면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충분히 길어야 한다. 그 예로 독일연방은행의 총재와 이사의 임기는 8년이다.
- ③ 중앙은행의 수장이나 위(임)원들은 중앙은행 정책을 이유로 정치적 기관에 의해 해임당해서는 안되며, 해임사유도 명확하게 사전에 규정되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의 위(임)원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중앙은행 직원의 급여수준을 높게 책정하는 것도 이를 위한 한 방법이다.
- ⑤ 중앙은행 위(임)원들의 full time 근무를 의무화하여 다른 지역 근무 또는 사적 업무를 막고, 해서는 안되는 행위 항목을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
- ⑥ 임기가 끝난 중앙은행 위(임)원들의 사금융기관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해야 한다. 일정 기간 정부의 관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임기 중 사익추구를 배제하기 위해서다.
- ⑦ 정부와 중앙은행 간에 위원회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두 기관 사이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운찬(1997)에서 재인용)

8) <표5>, <표6>, <표7>, <표8>, <표9>의 재임기간 분석과 퇴임사유 분석은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위원이 모두 퇴임한 2010년 4월말까지로 분석기간을 연장했다.

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망과 같이 생존이 종료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인 위험률(hazard rate)이나 잔존할 확률인 생존율(survival probability)을 종속 변수로 삼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생존율은 비모수적인 추정방법인 Kaplan-Meier(1958) 곡선으로 추정했으며, 생존분석 회귀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Cox(1972)의 비례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s model)으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재임기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IV. 제도적 분석: 제도변화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상과 지배구조 변화

아래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는 1950년 5월 5일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근거하여, 1950년 6월 5일 출범하였다. 처음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는 “金融 産業 經濟의 各界 代表로서 구성됨으로써...衆議制가 구현되어 있으며,...한국금융체계의 民主的 改編⁹⁾”을 상징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운영에 있어서, “政治的 中立性和 技術的 專門性, 機動的 自治性”이라는 3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경제(2인), 산업(2인), 금융(3인) 등 각계를 대표하는 7인으로 민주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으로 구성되었다. 비록, 재무부장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했지만, 위원 추천권을 ‘관료 2, 민간 3’으로 분할하였으며, 전체적인 持分은 ‘관료3, 민간3, 중앙은행1’로서, 위원의 추천과 구성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금융 측면에서 원활히 뒷받침한다’는 명분 아래 1962년 5월 24일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금융의 민주화와 중앙은행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후퇴¹⁰⁾하였다. 명칭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외환관리 업무를 재무부로 이관하고 재무부장관에게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再議요구권을 부여하였으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최종 결정을 ‘각의’에서 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9) 한국은행 구용서(具鎔書) 초대 총재의 “韓國銀行 創業에 際하여”(1950년6월12일) 중 일부.

10) 한국은행(2000), [한국은행50년사], p.34

<표 1> 한국은행법 제·개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지배구조 변화

	한국은행법 制定 (1950년5월5일)	한국은행법 제1차 개정 (1962년5월24일)	한국은행법 제6차 개정 (1997년12월31일)	한국은행법 제7차 개정 (2003년8월12일)
평가	民主-理想的 위원회	‘官’주도 위원회	‘韓國銀行’주도 위원회	‘韓國銀行’주도 위원회
명칭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재무부장관 =의장	재무부장관=의장	한국은행 총재=의장	한국은행 총재=의장
위원회 운영	위원 7인, 비상근, 임기4년	위원 9인, 비상근, 임기3년	위원 7인, 상근, 임기4년	위원 7인, 상근, 임기4년
위원 추천 기관	재무부장관(당연직) 한은 총재(당연직) 금융기관 선출(2인, 1년) 상공회의소 추천(1인) 농림부장관 추천(1인) 기획처경제위 추천(1인)	재무부장관(당연직) 한국은행 총재(당연직) 금융기관 추천(2인) 상공부장관추천(2인) 농림부장관 추천(2인) 경제기획원장관 추천(1인)	한은 총재(당연직) 한은 총재 추천(1인) 재경원장관 추천(1인) 금감위원장 추천(1인) 대한상의 추천(1인) 은행연합회 추천(1인) 증권업협회 추천(1인)	한은 총재(당연직) 한은 부총재(당연직, 3년) 한은 총재 추천(1인) 재경부장관추천(1인) 금감위원장추천(1인) 대한상의 추천(1인) 은행연합회추천(1인)
특징	금융(3인), 산업(2인), 경제 (2인)의 각계 대표(7인)로 구성. 정치적 中立, 專門性, 自治性을 천명.	외환업무를 한은에서 재무부로 이관. 재무부장관에게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의요구권 부여.	재경부장관은 위원에서 제외되고, 추천권 행사. 금감원과 금감위의 독립으로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권 상실.	한국은행의 독립적 예산편성권 확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민간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권을 없애고 대신 상공부장관의 추천권을 신설하였으며, 관료-민간-중앙은행의 대표성은 3:3:1에서 6:2:1로 개악되면서 ‘官’ 주도적¹¹⁾인 금융통화위원회로 변모했고, 위와 같은 ‘관’주도적인 금융통화위원회 운영은 1997년 말까지 35년 이상 지속되었다.

IMF 외환위기라는 격랑 속에서 1997년 12월 31일 한국은행법이 다시 개정됨에 따라, 1950년 6월 창립 당시의 ‘금융통화위원회’로 명칭이 환원되었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하게 되었으며, 재경부장관은 위원 추천권만 행사하게 되었다. 또한, 7인의 위원 전원이 상근하고 임기도 4년으로 연장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하고 자유롭게 의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정비되었다. 특히, 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의 압력이나 형식적 의안 통과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2003년 8월 ‘증권업협회장’의 추천권이 없어지고, 대신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중앙은행’의 주도성이 강화되었다. 즉, 관료-민간-중앙은행의 대표성이 1950년 최초 설립時 3:3:1에서 1962년 1차 개정時 6:2:1로, 1997년말 6차 및 2003년8월 7차 개정으로 이제는 2:2:3으로 크게 변화했다.各界를 민주적으로 대표하도록 설계되었던 경제:

11) 당시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해 의안을 통과시키고 식사만 하고 간다는 의미에서 ‘食客’으로 불렸으며, 한국은행은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납대문 출장소’라고 시니컬하게 불렸다.

산업:금융의 비율은 최초 2:2:3에서 1962년 1차 개정 후 2:4:3으로, 그리고 6,7차 개정 후 1:1:5¹²⁾로 변하여 ‘금융’의 代表性이 강화되고 있다.

V. 기술통계적 분석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1950년 6월 출범한 이래 약 60년의 기간 동안 무려 46명의 위원장을 배출했으며, 평균 재임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도, 1950년부터 2007년 말까지 약 60년 동안 무려 200명이나 선임되었다.

이하에서는 1950년 6월부터 2007년 말까지 임면된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0명(중복 포함)의 나이, 성별, 출신지역, 학력, 재임기간, 퇴임사유 등에 관하여 기술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바뀔 때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임면에 있어서 어떤 특성이 발견되는지를 살펴보았다.

1. 인적 사항(출신지, 학력, 직업) 분석

먼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출신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대통령이 바뀔 때 따라서 위원들의 출신지역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출신지역: 대통령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출신지역

출신지	이승만 (황해)	윤보선 (서울)	박정희 (경북)	최규하 (강원)	전두환 (경남)	노태우 (경북)	김영삼 (경남)	김대중 (호남)	노무현 (경남)	합계
서울	7	4	10	0	3	1	5	3	1	34
경기	2	0	4	1	1	2	1	0	1	12
강원	1	0	0	0	0	2	2	1	0	6
충청	6	1	9	0	1	2	2	2	1	24
호남	1	1	3	0	4	0	1	5	1	16
경북	2	3	11	2	8	3	2	3	1	35
경남	3	2	5	0	4	5	3	2	4	28
황해	4	1	3	0	0	0	0	0	0	8
평안	2	2	2	0	2	0	0	0	0	8
함경	0	0	1	0	0	0	0	0	0	1
제주	0	0	0	0	0	1	0	1	0	2
합계	28	14	48	3	23	16	16	17	9	174

주: 1~2공화국 사이의 정권 공백기 5인, 출신지역 미확인 21인 제외.

12) 모두 7인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경제 1),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산업 1),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부총재, 한국은행 추천, 은행연합회장 추천, 금감위원장 추천(금융 5)로 분류하여 1:1:5가 된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서울과 충청, 그리고 황해도 출신의 順으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많이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고향인 황해도 출신 백두진씨가 식산은행장과 재무부장관을, 임송본씨가 식산은행장을, 그리고 김유택씨가 재무부 차관과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는 등 금융계의 요직을 차지했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35년 이상 영남출신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호남출신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고 당선되었던 노무현 대통령 역시 자신의 고향인 경남출신을 전체 9명 중에서 4명 임명했다. 전체적으로는 영남 출신이 전체 174명 중에서 63명으로 다수를 점했다.

즉, 정치적 중립성과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앙은행 총재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인사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정실주의적 특성이 일부 반영되고 있으며, Moe(1985)와 박대식(2007)의 연구에서 주장했던 고위직 임용의 정치화(politicization)가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에도 시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학력을 살펴보면,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보선,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일본 유학파’들이, 그리고 ‘대학 졸업’이 다수를 점했으며, 이후 전두환 대통령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학파’들이, 그리고 ‘대학원 졸업’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특히, 집권 과정에서 정통성이 약했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해외박사들을 12명(전체 24명의 50%) 임명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표 3> 학력: 대통령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학력

학력	이승만 (美박사)	윤보선 (英대졸)	박정희 (日육사)	최규하 (日대졸)	전두환 (육사)	노태우 (육사)	김영삼 (대졸)	김대중 (고졸)	노무현 (고졸)	합계
고졸이하	6	0	3	0	0	0	0	0	0	9
국내대졸	5	6	21	2	8	10	5	4	1	62
일본대졸	17	8	27	0	0	1	0	0	0	53
영미대졸	1	1	0	0	0	0	0	0	0	2
국내석사	0	0	0	0	1	0	2	0	0	3
해외석사	0	1	5	0	1	0	0	7	6	20
국내박사	0	0	0	0	2	0	0	0	0	2
해외박사	3	0	5	1	12	5	9	6	2	43
합계	32	16	61	3	24	16	16	17	9	194

주: 1~2공화국 사이의 공백기에 임명된 5인과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4인, 학력 미확인 1인 제외

세 번째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직업을 살펴보면,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금융인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전두환 대통령부터 김영삼 대통령까지는 대학교수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관료출신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금융인 출신

신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특히, 제5공화국 이후 ‘교수’들이 다수 등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경제분야의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교수’들을 추천하여 정권의 정통성 부족을 보완하려 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衆議制의 구현을 위해 설립 초기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추천권이 적극 행사되었으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상공부장관 추천권’으로 변경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추천권이 부활된 1998년 이후에도 사업가 보다는 교수를 추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으나, 금융통화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금융회사 또는 민간기업의 대표(CEO)를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서 추천하는 것도 지배구조 개선의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 주요 경력: 대통령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직업

직업	이승만 (정치인)	윤보선 (정치인)	박정희 (군인)	최규하 (관료)	전두환 (군인)	노태우 (군인)	김영삼 (정치인)	김대중 (정치인)	노무현 (정치인)	합계
관료	5	2	14	0	4	5	5	7	2	44
금융인	20	6	27	1	4	5	3	4	5	75
교수	2	4	7	1	15	6	8	6	2	51
기업인	4	2	10	1	1	0	0	0	0	18
정치인	2	1	1	0	0	0	0	0	0	4
군인	0	1	2	0	0	0	0	0	0	3
합계	33	16	61	3	24	16	16	17	9	195

주: 1~2 공화국 사이의 정권 공백기 5인 제외.

2. 재임기간 분석

미국 FRB 이사의 재임기간은 14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독일 연방은행 이사의 재임기간은 8년으로 대통령이나 총리의 재임기간에 비해 충분히 길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대통령의 임기 5년에 비해서도 짧으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0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28.4개월에 불과¹³⁾하고, 임기를 못 채우는 경우가 50% 이상이었다. 그 실상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아래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대통령에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평균 재임기간¹⁴⁾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임명 스타일이 반

13) 1-2공화국 사이의 정권 공백기에 임명된 5명(평균 재임기간 6.8개월)을 제외한 195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표 5>에서와 같이 29.0개월로 늘어난다.

14)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은 임명권자를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따라서 군사쿠데타나 한국은행법 개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물러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을 임명한

영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물론, 1960년 4.19혁명과 1961년 5.16쿠데타, 1979년 10.26사태, 12.12쿠데타 등 정변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면이 거듭되었으며, 아울러 1997년 말의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인해 다수의 위원들이 불가피하게 퇴진하는 등 다양한 외부요인¹⁵⁾이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쳤다.

역대 정부별로 재임기간을 보면,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의 경우 군사정변으로 재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재임기간도 각각 7.5개월, 14.3개월로 가장 짧았다.

<표 5> 재임기간(1): 대통령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평균 재임기간
(단위: 개월, 인)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체
24.8 (33)	7.5 (16)	33.1 (61)	14.3 (3)	33.7 (24)	36.1 (16)	20.8 (16)	31.7 (17)	41.8 (9)	29.0 (195)

주 1: () 안은 관측치(위원)의 수이며, 노무현 정부는 2010년4월에 모두 퇴임한 9인까지 포함.

2: 1-2공화국 사이에 임명된 5명을 포함한 200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28.4개월

박정희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까지는 모든 위원들의 임기가 3년으로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제6차 한은법 개정에 따른 중도 퇴임이 영향을 미쳐 20.8개월에 불과했으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의 재임기간은 김영삼 정부의 경우에 비해 평균적으로 1년 이상 길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상근하게 되고 임기도 4년으로 늘어난 김대중 정부¹⁶⁾ 이후 다시 재임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41.8개월로 가장 길었다.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15)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과 윤보선 대통령 시절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금융기관 선출위원은 1년, 나머지 위원들은 4년이었으며,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영삼 대통령까지는 모든 위원들이 동일하게 3년, 김대중 대통령부터는 4년이였다. 노무현 대통령부터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임기 3년인 한국은행 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의 임기가 4년이였다. 따라서, 위원들의 재임기간을 역대 대통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으며, 아울러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도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자 한다.

16) 제6차 한은법 개정으로 임기가 4년으로 늘어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재임기간이 31.7개월에 불과한 이유는 새로 임명된 위원들이 특정 대통령 임기에 모두 교체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당시 새로 임명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3인의 임기를 당시에 한해 2년으로 했기 때문이며, 제6차 한은법 개정으로 위원에서 물러난 당시 이규성 재무부장관의 재임기간이 1개월에 못 미쳤기 때문

<표 6> 재임기간(2): 추천기관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 추이
(단위: 개월, 인)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	상공회의소	전체
평균 재임기간	27.7 (111)	32.6 (27)	27.7 (47)	28.6 (10)	29.0 (195)

주: () 안은 관측치(위원)의 數이며, 1-2공화국 사이의 공백기 5인 제외. 2010년 4월말 기준.

위 <표 6>에 따르면, 추천기관¹⁷⁾에 따라서도 평균 재임기간이 달라지는데, 중앙은행 추천위원의 경우 32.6개월로 가장 길게 재임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추천위원의 경우는 ‘재무부 장관’의 잦은 교체가 영향을 미쳤으며, 금융기관 추천위원의 경우 설립 초기에 임기가 1년이었던 것이 전체적인 평균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쳤다.

아래 <표 7>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상근을 시작하게 된 1998년 이후 임명된 위원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36.6개월이며, 그 이전의 비상근 위원들의 평균 재임기간 27.2개월에 비해 9.4개월 이상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4년 임기의 위원들이 상근하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평균 재임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표 7> 위원의 상근 여부 및 이력의 차이에 따른 평균 재임기간
(단위: 개월, 인)

	상근 여부 (++)	관료 경력 (—)	금융기관 경력 (-)	중앙은행 경력 (+)	교수 경력 (+++)	대졸 여부 (-)	박사 여부 (++)	서규유학 여부 (+)
그렇다/있다	36.6 (25)	21.1 (92)	27.3 (88)	30.1 (62)	36.0 (54)	26.7 (126)	33.1 (45)	32 (66)
아니다 /없다	27.2 (175)	34.6 (108)	29.2 (112)	27.6 (138)	25.5 (146)	30.9 (73)	26.8 (154)	26.4 (133)

주 1: +와 - 기호는 영향의 방향. 기호가 많을수록 영향이 커짐.

2: () 안의 숫자는 관측치(위원)의 數.

3: 전체 200명 대상. 2010년 4월말 기준. 학력 데이터의 경우 결측치 1개 존재

경력의 차이에 따른 재임기간의 차이는 <표 7>의 좌측에 드러나 있는데, 재무부장관의 잦은 교체와 관료 출신들의 신분 변동으로 인해, 관료 경력을 가진 위원들의 재임기간(21.1개월)이 그렇지 않은 경우(34.6개월)에 비해 많이 짧다. 또한, 중앙은행 경력을 지닌 분들의 재임기간이 더 길고, 교수 경력을 지닌 분

17) 정부 추천에는 과거 재무부장관(당연직)과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금감위원장 추천이 포함되며, 금융기관 추천에는 과거 민간금융기관 선출, 증권업협회 추천, 은행연합회 추천이 포함됨

들은 훨씬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 금융기관 경력의 경우,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짧은 데, 이는 설립 초기에 금융기관을 대표한 2명의 위원의 임기가 1년이었던 제도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학력의 차이에 따른 재임기간의 차이도 위 <표 7>의 우측에 드러나 있는데,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재임기간이 6.3개월 이상 길다. 이는 해외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들이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난 사례가 많다는 점과 연결된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출생지역별 재임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 24.2개월(34명), 경기 35개월(12명), 충청 26개월(24명), 호남 46.8개월(16명), 영남 27.3개월(63명), 강원 22개월(6명), 제주 32개월(2명), 황해도 등 이북지역 24개월(17명)로 나타나, 호남지역 출신의 재임기간이 46.8개월로 가장 길었다.

3. 퇴임사유 분석

대통령에 따른 퇴임사유의 추이는 아래 <표 8>에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정부에서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사임이 가장 많았으나, 윤보선 대통령의 경우에는 5.16쿠데타와 제1차 한은법 개정예 따라 ‘정권교체 사임’과 ‘제도변화 사임’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잦은 장관교체와 제6차 한은법 개정으로 인해, ‘경질에 따른 사임’이 가장 많았으며, ‘제도변화 사임’도 많았다.

<표 8> 퇴임사유 분석(1): 대통령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퇴임사유 추이

퇴임사유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합계
임기만료	17	3	28	0	11	11	2	11	8	91
승진사임	1	1	8	1	1	0	0	3	1	16
경질사임	8	2	7	1	4	2	6	0	0	30
자의사임	2	0	12	1	6	2	0	0	0	23
불만표시	0	1	1	0	0	0	1	1	0	4
정권교체	5	3	5	0	2	1	2	0	0	18
제도변화	0	6	0	0	0	0	5	2	0	13
합계	33	16	61	3	24	16	16	17	9	195

주1: 1-2공화국 사이의 정권 공백기에 임명된 5인 제외.

주2: 노무현 정부 임명 위원이 모두 물러난 2010년4월 기준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46%에 불과하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이승만 52%, 윤보선 19%, 박정희 46%, 전두환 46%, 최규하 0%, 노태우

69%, 김영삼 13%, 김대중 65%, 노무현 89%이다. 특히 '97년 말의 제6차 한은법 개정에 따라 김영삼 정부 하에서 임명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제도변화'에 따른 중도 퇴임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제도가 독립적인 운영과 위원 선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이후 '임기만료'의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며 향후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앙은행 관련 제도 및 정치체제의 안정이 위원들의 퇴임 사유, 재임기간에도 영향을 미침을 시사해준다.

추천기관별로 퇴임사유 비중을 보면, 아래 <표 9>에 나타나 있듯이, 정부 추천위원의 경우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의 비율이 37%(42명)로 가장 낮는데, 이는 당연직 의장이었던 재무부 장관의 잦은 교체, 정부가 추천한 관료출신 위원의 승진이나 이직 등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 추천위원의 경우에도 '임기만료'의 비율이 43%(12명)에 불과하며, 불만표시와 정권교체 등 타의에 의한 사임의 비율이 39%(11명)에 달한다.

<표 9> 퇴임사유 분석(2): 추천기관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퇴임사유 추이

퇴임사유	임기만료	승진사임	경질사임	자의사임	불만표시	정권교체	제도변화	합계
정부 추천	42	8	29	15	0	13	7	114
한국은행	12	2	1	3	3	7	0	28
금융기관	31	6	0	4	0	2	5	48
商議 추천	6	0	0	1	1	1	1	10
합계	91	16	30	23	4	23	13	200

주 1: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이 모두 퇴임한 2010년 4월말 기준

2: 앞 <표 8>의 195명에 비해 관측치가 200명으로 증가한 것은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중간의 정권 공백기에 임명된 5인을 '정권교체' 퇴임으로 분류하여 포함시켰기 때문임

VI. 재임기간에 대한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존분석 방법을 이용했다. 생물학 및 의학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은 생존기간(survival time)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생존기간이란 어떤 정해진 시작점으로부터 사망과 같이 생존의 종료를 초래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이 생존기간에 해당되며, 위원에서 면직되는 사건이 의학에서의 사망과 같이 생존이 종료되는 사건에 해당된다.

생존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망과 같이 생존이 종료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인 위험률(hazard rate)이나 잔존할 확률인 생존율(survival probability)을 종속 변수로 삼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생존분석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위험률(hazard rate) 또는 위험함수(hazard function)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재임기간과 관련하여 표현하면 특정인 이 t 시점까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다는 조건하에서 짧은 시간 구간에서 그 특정인의 면직이 관측될 확률을 의미하므로 일종의 순간면직위험(instantaneous failure risk)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위험률 $h(t)$ 는 t 시점까지 재임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순간면직률 또는 순간사망률로서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t \leq T < t + \Delta t | T \geq t)}{\Delta t} = \frac{f(t)}{S(t)}$$

여기서 T 는 생존기간이며, $f(t)$ 와 $S(t)$ 는 각각 확률변수인 생존기간 T 의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와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이다. 생존율이 라고도 하는 생존함수 $S(t)$ 는 t 시점 이전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면직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말하며, $S(t) = P(T > t) = 1 - F(t)$ 로 정의된다. 이 때, $F(t)$ 는 생존기간 T 의 누적확률분포함수(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를 나타낸다. 생존율은 흔히 비모수적인 추정방법인 Kaplan-Meier(1958) 곡선으로 추정한다.

Kaplan-Meier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명시점을 0으로 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면직시까지의 소요기간을 계산한다. 현재의 관찰시점까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표본의 경우에는 절단자료(censored data)로 분류되며, 관찰시점까지의 기간을 절단기간이라고 부른다. 이제 i 번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t_i 시점까지 면직되지 않고 재임하고 있을 확률을 $S(t_i)$ 라고 하면,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t_i) = \prod_{j=1}^i \left(1 - \frac{d_j}{n_j} \right)$$

여기서 d_j 는 t_j 시점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재임이 종료되는 표본의 개수이며, n_j 는 t_j 시점 직전까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재임이 종료되지 않은 표

본의 개수이다. 절단자료의 경우에는 절단기간이 t_j 를 초과하는 여기에 포함되고 절단기간이 t_j 를 초과하지 못하는 자료는 제외된다.

본 논문에서는 생존분석 회귀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Cox(1972)의 비례위험 모형(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재임기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 모형은 각 관측치 i 에 대한 위험함수 $h_i(t)$ 를 모든 표본에 공통적인 기저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와 각 표본의 설명요인들의 함수로 나타낸 개별위험함수인 상대위험함수(relative hazard function)의 곱으로 표현한다. 즉, $h_0(t)$ 를 기저위험함수라고 할 때 Cox 모형에서 각 관측치의 위험함수는 식(1)의 형태를 가진다.

$$\begin{aligned}
 h_i(t) &= h_0(t) \exp(Z_i \beta) \\
 &= h_0(t) \exp(\beta_1 z_{i1} + \beta_2 z_{i2} + \dots + \beta_k z_{ik})
 \end{aligned}
 \tag{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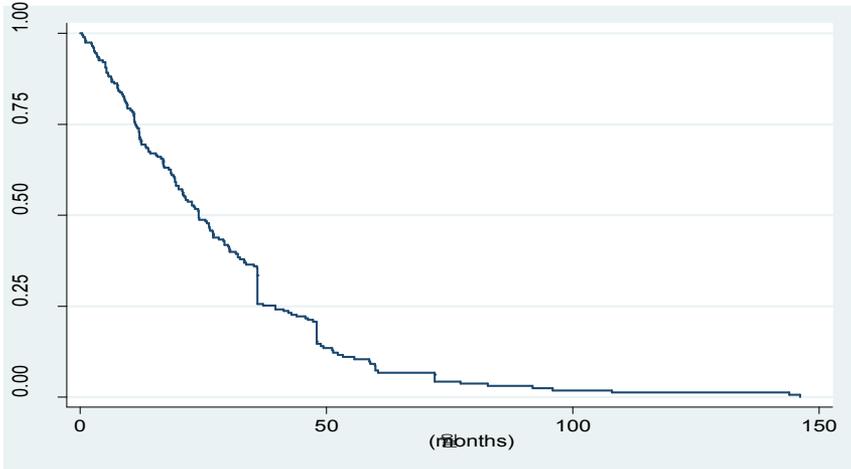
여기서 $Z_i = (z_{i1}, z_{i2}, \dots, z_{ik})$ 는 k 개의 설명변수로 이루어진 i 번째 관측치의 설명변수 벡터이고, $\beta' = (\beta_1, \beta_2, \dots, \beta_k)$ 는 해당 설명변수에 대응하는 회귀계수 벡터이다. 만약 모든 설명변수의 값이 영(zero)의 값을 가지게 되면 지수함수로 이루어진 개별위험함수는 1이 된다. 이는 각 설명변수가 위험함수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위험함수 $h_i(t)$ 는 모든 관측치에 동일한 기저위험함수만을 갖게 된다. Cox의 비례위험모형에서는 기저위험함수 $h_0(t)$ 에 대한 사전적인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Cox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1. 생존분석 결과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재임기간에 대한 생존율 곡선을 분석한다. 생존율이란 주어진 시점까지 분석의 대상이 여전히 재임하고 있을 확률을 의미한다. Kaplan-Meier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생존율 곡선은 <그림 1>에서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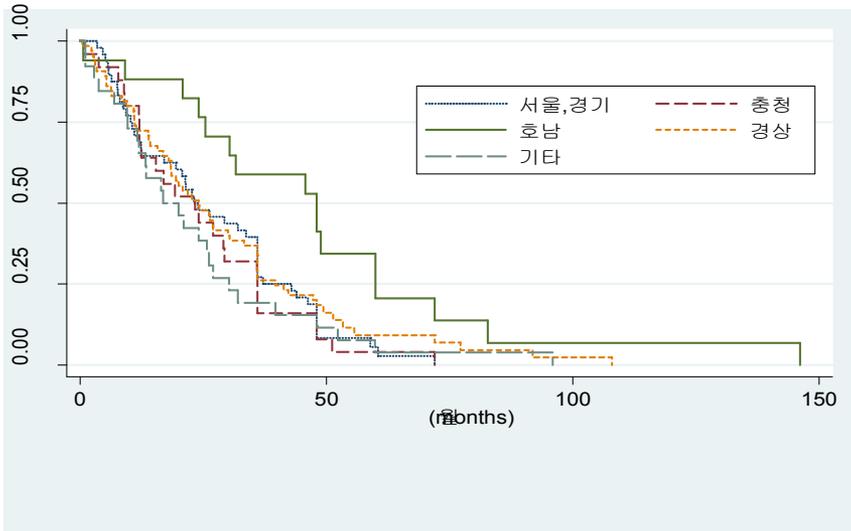
아래 <그림 1>은 전체표본에 대한 생존율 곡선을 구한 것으로 그림으로부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생존시간의 중앙값이 전체 표본에서 대략 24개월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Kaplan-Meier 생존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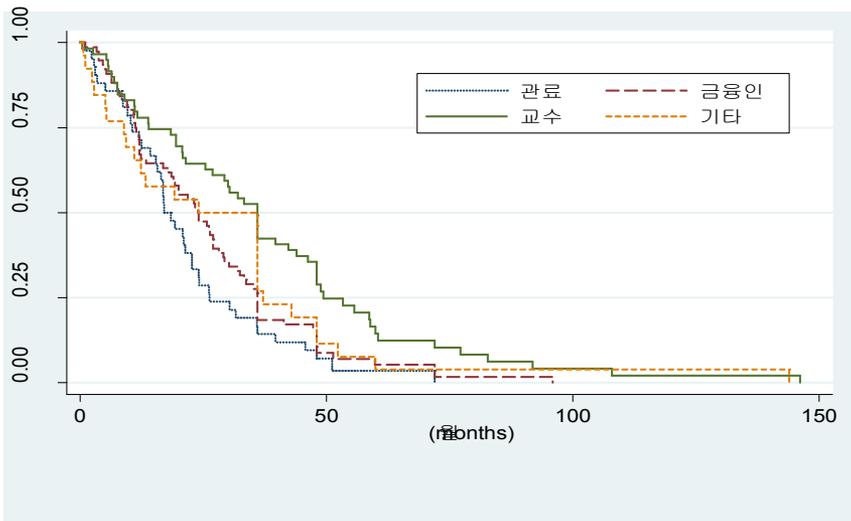
출신지역별로 자료를 구분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생존율 곡선을 구한 아래 <그림 2>를 보면 생존시간의 중앙값이 서울·경기지역은 약 23.1개월, 충청 지역은 약 21.0개월, 호남지역은 약 46.0개월, 경상지역은 약 22.6개월, 기타 지역은 약 16.8개월임을 알 수 있다. 그림으로부터 호남지역 출신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비슷한 생존기간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출신지역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Kaplan-Meier 생존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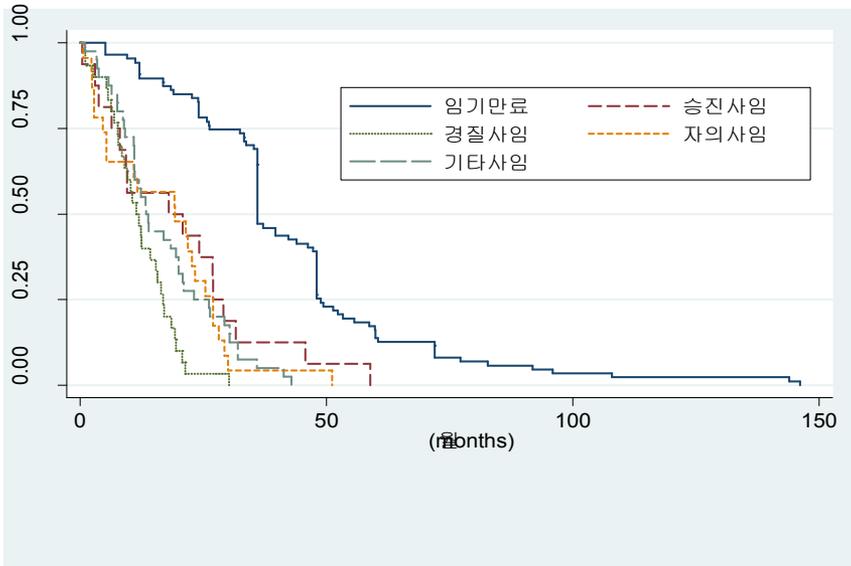
아래 <그림 3>과 <그림 4>는 각각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경력별과 퇴임사유별로 분류하여 생존율을 구한 것이다. 경력별 생존율 곡선으로부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재임기간의 중앙값이 관료출신의 경우에는 약 17.0개월, 금융인 출신은 약 24.0개월, 교수 출신은 35.9개월, 기타 출신들은 약 24개월임을 알 수 있다. 그림으로부터 교수 등 학계 출신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3> 경력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Kaplan-Meier 생존곡선



<그림 4>의 퇴임사유별 생존율 곡선을 보면 퇴임사유가 임기만료인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재임기간의 중앙값이 약 35.9개월, 승진사임은 약 18.0개월, 경질사임은 약 11.3개월, 자의사임은 19.2개월, 기타 정권교체나 제도변화 등의 이유로 사임한 경우에는 약 13.3개월임을 알 수 있다. 당연한 이유이겠지만 임기만료로 분류된 경우가 다른 퇴임사유에 비해서 생존율의 중앙값이 약 2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퇴임사유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Kaplan-Meier 생존곡선



2. Cox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에 대한 Cox 비례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추정하기 위하여 설명변수로는 위원의 나이, 출신지역, 경력, 퇴임사유, 임명 당시 대통령과의 동향 여부, 임명 당시 대통령과의 동문 여부, 중앙은행 추천 여부, 제도변화, 정부 성격 등을 사용하였다. Cox 모형에서의 종속변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험률(hazard rate)이다. 따라서 설명변수들의 계수 값인 β_i 들이 양의 값이면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어 재임기간은 짧아지게 되고, 반대로 음의 값이면 위험률이 낮아지게 되어 재임기간은 길어지게 된다.

아래 <표 10>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임명된 후 면직되는 기간에 대한 Cox 회귀모형의 추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 나이 변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대통령과의 동향 변수는 임명 당시의 대통령과 동향이면 1의 값을 갖고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며, 대통령과의 동문 변수는 임명 당시의 대통령과 같은 학교 출신이면 1의 값을 갖고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중앙은행 추천 변수는 중앙은행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경우에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1962년 제도변화 변수는 1962년5월 제1차 법 개정 이후부터 1997년말 제6차 법 개정 이전까지 임명된 경우에는 1의 값을 갖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이다. 1997년 제도변화 변수는 1997년말 제6차 법 개정 이후 임명된 경우에는 1의 값을 갖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정부성격 변수는 임명당시 정부의 성격이 민간정부인 경우에는 1, 군사정부인 경우에는 0¹⁸⁾의 값을 갖는다. 출신지역별, 경력별, 퇴임사유별 더미변수도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의 값을 갖고 그 외는 0의 값을 갖는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인해 출신지역별 변수의 경우에는 서울경기지역을, 경력별 변수의 경우에는 금융인 출신을, 그리고 퇴임사유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더미변수를 각 범주의 기준변수(reference variable)로 삼아 Cox 회귀식의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범주별 더미변수에 대해 추정된 계수값의 해석은 이들 기준변수와와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된다.

〈표 10〉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재임기간에 대한 Cox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계수	표준오차	t-통계량	p-값	
대표성 관련변수	출신 지역	충청지역	-0.5143	0.2963	-1.74	0.083
		호남지역	-0.6065	0.2802	-2.16	0.030
		영남지역	0.2030	0.2066	0.98	0.326
		기타지역	-0.0886	0.2815	-0.31	0.753
전문성 관련 변수	경력	교수	-0.5120	0.2377	-2.15	0.031
		정치인	0.5427	0.2923	1.86	0.063
		관료	0.1488	0.1901	0.78	0.434
	중앙은행 추천 여부	-0.3895	0.2123	-1.83	0.067	
정실성 관련 변수	대통령과 동향 여부	-0.2298	0.2115	-1.09	0.277	
	대통령과 동문 여부	0.0035	0.2144	0.02	0.987	
기타 설명 변수	나이	-0.0244	0.0162	-1.51	0.131	
	퇴임 사유	승진사임	1.2321	0.3636	3.39	0.000
		경질사임	2.1079	0.2989	7.05	0.000
		자진사임	1.8510	0.3992	4.64	0.000
		기타사유	1.2833	0.3161	4.06	0.000
	제도 변화	1962년 제도변화	-0.4352	0.2282	-1.91	0.056
		1997년 제도변화	-0.8496	0.4602	-1.85	0.065
정부성격	1.0637	0.2566	4.15	0.000		

먼저 나이 및 임명 당시 대통령과의 동향 또는 동문 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18) 민간정부란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말하며, 군사정부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지칭.

이들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나이와 대통령과의 동향 여부는 부호가 음이어서 재임기간이 길어지는 영향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 값을 갖지 못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대통령과 같은 학교 출신인 경우에는 계수 값이 양이기는 하나 t-통계량이 매우 낮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앙은행의 추천을 받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유의하게 음의 계수 값을 가져 다른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비해 재임기간이 더 길다고 분석되었다.

제도변화 변수 가운데 ‘1962년 제도변화’¹⁹⁾와 ‘1997년 제도변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7년 제도변화’가 매우 큰 음(-)의 값을 나타낸 것은 1997년12월의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직위가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되는 등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좋아진 처우와 안정성이 위원들의 임기만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역량(competence)을 제고시켜, 재임기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성격이 민간정부인지 군사정부인지 여부는 재임기간에 매우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정부일수록 위험률이 높아져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임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에서 ‘1997년 제도변화’에 의해 재임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제도변화 변수에 의해 통제된 상태에서 윤보선·최규하 정부의 과도기적 성격, 김영삼 정부의 잦은 위원 교체 등에 의해 민간정부의 재임기간이 설명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출신지역별 더미변수의 경우에 두드러지는 점은 기준변수인 서울경기 지역에 비하여 호남지역 출신의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경기지역 출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호남지역 출신의 재임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길었음을 의미한다. 충청지역 출신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가져 서울·경기지역 출신에 비해 긴 재임기간을 가지는 경향이 발견되었으나 호남지역 출신의 경우에 비해서는 다소 영향력이 작았다. 영남지역 출신의 경우에는 서울·경기지역 출신과 재임기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경력별 더미변수들을 살펴보면 교수출신 위원은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나타내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정치인출신 위원은 유의한 양(+)

19) ‘1962년 제도변화’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1962년의 제1차 법 개정을 긍정적인 제도변화라고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변화의 영향이기보다는 1962년 이전에 비해 좀 더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의 계수 값을 나타내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수출신 위원의 경우 Kaplan-Meier 생존곡선에서 살펴본 결과와 일치한다. 전문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교수출신 위원과 중앙은행추천 위원의 재임기간이 유의하게 길다고 나타난 것은 향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임명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퇴임사유에 따른 분류의 경우에는 기준변수인 임기만료에 비해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질사임의 경우에는 계수 값이 가장 높아 임기만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임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진사임의 경우나 자진사임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기만료의 경우에 비해서 재임기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Kaplan-Meier 생존곡선에서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VII. 분석 결과 및 한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화신용정책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 관하여 인사행정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한 첫 번째 작업이며, 설립 이후 60주년이 된 금융통화위원회의 지배구조 변화, 위원 200명의 임명과 재임기간에 관한 기술통계적 분석,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생존분석 방법을 시도했으며, Cox의 비례위험 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주요 설명변수 도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해보면, 먼저, 제도적 분석을 통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지배구조가 설립 초기의 ‘민주적-이상적’ 위원회에서, 1962년 5월 제1차 개정 이후 ‘관’ 주도적 위원회로,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에는 ‘한국은행’ 주도적 위원회로 각각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술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먼저, 대통령의 고향 출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등용되고 있으며, 대통령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출신지역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치적 중립성과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앙은행 총재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인사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정실주의적 특성이 일부 반영되고 있으며, Moe(1985)와 박대식(2007)의 연구에서 주장했던 고위직 임용의 정치화(politicization)가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도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술통계적 분석을 통해 ‘재임기간’과 ‘퇴임사유’를 살펴본 결과, 대통령과 제도변화에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과 퇴임사유가 많이 달라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잦은 경질과 제도 변화로 재임기간이 평균 1년 가까이 짧았다. 김영삼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의 임기만료 비율이 12.5%에 불과했음에 비해,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65%로 크게 높아졌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89%까지 올라갔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상근하게 되면서 평균 재임기간도 길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었고, 교수출신과 해외박사의 경우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넷째,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방법인 Kaplan-Meier 생존곡선,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주로 어떤 요인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여러 요인 중에서도 ‘1997년 제도변화’ 변수가 재임기간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줬는데, 이는 1997년12월의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상근하게 되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하는 등의 제도변화가 위원들의 임기만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위원들의 역량을 제고시켜 재임기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력과 관련해서는 교수출신 위원과 중앙은행추천 위원의 경우 유의하게 재임기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정치인출신 위원의 경우 재임기간이 유의하게 짧았다. 따라서, 향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임명할 경우 전문성과 관련된 경력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정부 성격이 민간정부일수록 재임기간이 짧게 나타났는데, 이는 윤보선·최규하 정부의 과도기적 성격, 김영삼 정부의 잦은 위원 교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된다.

출신지역과 관련하여, 호남지역 출신 위원의 재임기간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²⁰⁾ 이는 호남출신들이 소외받는다든 비판적 사회여론을 감안한 대표성 차원의 인사원리가 일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과거 경력 분류와 퇴임 사유 분석에 있어서의 자의성이다. 대학교수 출신으로 한국은행에 근무하다가 재무부 장관을 거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된 경우 가장 오래 근무했던 경력으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적 견해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면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와 미국 연준(FRB)의 제도

20) 호남 출신의 장수 위원은 2회에 걸쳐 206개월 재임하여 최장수 기록을 세웠던 홍성하, 2회에 걸쳐 120개월 재임한 전철환, 1회에 걸쳐 82개월 재임한 김익현, 1회에 걸쳐 60개월 재임한 정문기 등이 있다.

및 사례를 비교²¹⁾해보고자 했지만, 시간과 능력의 부족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1914년에 출범한 미국 FRB 의장 및 이사의 임면 과정은 어떻게 변해왔으며, 미국 재무부와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해왔는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는 것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있어서의 특이성이 물가, 금리, 통화량 등 정책의 성과지표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히는 것 역시 다음 연구 주제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재중(1987),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獨立性에 관한 연구』, 석사 논문, 서울大 行政大學院
- 김진호(1995),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법의 규정과 관행을 중심으로』, 석사 논문, 서울大 行政大學院
- 김창규(1989), 『韓銀獨立性 保障을 위한 制度改善案의 比較評價』, 석사 논문, 서울大 行政大學院
- 김태은(2002), 『한국·미국의 중앙은행제도 비교 분석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석사 논문, 고려대 행정대학원
- 김태일 외(2001), 『인사행정의 과학화를 위한 정부 인사지표 개발』, CSC정책연구보고서 2001-03,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김호균(2001), 『장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두환-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행정대학원
- _____(2004), 『21세기 성공장관론』, 나남출판사.
- 내외홍보사(1949), 『대한민국인사록』 『동아일보』 인물정보 <http://www.inmul.donga.com>

21)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1950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전문가 2명을 파견 받아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FRB와 비슷한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위원들의 임면과 업무수행과 관련된 운영 행태는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60년 역사 동안 46명의 의장과 204명의 위원을 배출했고, 이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의장 14개월, 위원 28개월에 그치는 불안한 제도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FRB는 1914년 이래로 96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FRB 의장은 통산 14명에 불과하며, 이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6년 이상이었으며, 짧게는 14개월에서 길게는 20년 가까이 재임한 경우도 있었다. FRB 이사의 경우에도, 1914년에서 1989년까지 75년 동안에 모두 68명이 재임하였으며, 특히 M. S. Szymezak의 경우에는 1933년부터 61년까지 무려 28년 동안 근무하였다. 1935년 미국 은행법 개정으로, 재무부 장관과 통화감독관은 FRB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으며, 7명의 이사 전원을 상원의 인준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었고, 임기는 14년으로 정해졌다. 미국 대통령의 최대 재임기간인 8년보다 4년 더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병익·이시원(2007), 정부의 내외적 환경에 따른 역대 정부의 장관임명 유형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4권제2호: 13-36
- 박대식(2007), 제도적 대통령에 관한 비교분석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4): 67-87, 한국행정학회
- 박신창(1988), 『中央銀行의 獨立性和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개편에 관한 研究』, 석사 논문, 서울대 行政大學院
- 박진수·장득록(2003), 第7次 韓國銀行法 改正의 主要 內容과 意義, 『조사통계월보』, 제57권 통권 제661호:47-67, 한국은행
- 송영대(1965), 『獨立規制委員會로서의 金融通貨委員會』, 석사 논문, 서울대 행정대학원
- 여강출판사(1987), 『한국 근현대사 인명록』
- 이방식(2006), 한국은행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제도의 개선방향, 『産經論叢』, 제26권2호:91-110, 전주대학교산업경영종합연구소
- 이시원(2002),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장관임용실태 분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시원·민병익(2002), 우리나라 역대정부 장관의 재임기간 및 배경분석, 『한국행정연구』, 제11권 제3호: 53~82
- _____(2005), 역대 정부 장관의 경력경로 분석, 『한국행정논집』, 제17권제1호: 215-239
- 정운찬(1997), 中央銀行制度 改編에 관하여, 『韓國行政研究』, 6(2):113-130, 韓國行政研究院
- 진영택(1990),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獨立性에 관한 연구』, 석사 논문, 서울시立大 大學院
- 정광호 외(2007) 『장관 임면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 중앙인사위원회(CSC) 정책연구 보고서 2007-02
- 조용탁(2006), 한은 독립운동사 :권력에 깃뻛힌 치욕의 역사...이젠 자울에 대한 책임 필요할 때, 『이코노미스트』, 통권852호:14-27,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6.08.29
- 조흥은행(1957), 『조흥은행50년지』 『중앙일보』 인물정보 <http://www.people.joins.com>
- 차성웅(1987), 『우리나라 獨立規制委員會에 관한 研究: 金融通貨運營委員會와 勞動委員會를 中心으로』, 석사 논문, 延世大 行政大學院
- 한국은행(2000), 『한국은행50년사』
- 한국은행(번역), 『미국연방준비제도 75년사』(Carl H. Moore 著)
- 한국학술진흥재단(1988), 『학술연구자 인명록』
- BIS(2009), “Issues in the Governance of Central Banks”, 2009
- Cohen, Jeffrey E.(1986), “On the Tenure of Appointive Political Executiv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3), pp.507-516.

- Cox, D. R. (1972) "Regression models and life tabl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Vol. 34, pp. 187 -220.
- Jan-Erik Lane(2005),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Management-The principal-agent perspective-』, *Routledge*, 2005
- Kaplan E. L. and Meier, P. (1958) "Nonparametric estimation from incomplete observations."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53, pp. 457-481.
- Kim, Yungsan & Ryu, Keunkwan (1998), "Duration Analysis of CEO Turnovers Using Proportional Hazard Model", *Seoul Journal of Economics*, 11(3), pp.243-259.
- Lastra, Rosa M. (1996), *Central Banking and Banking Regulat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London
- Lewis, David E. (2003), *Presidents and the Politics of Agency Design*,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7), "Testing Pendleton's Premise: Do Political Appointees Make Worse Bureaucrats?", *Journal of Politics* 69(4), pp.1073-1088.
- _____ (2008), *The Politics of Presidential Appointments: political control and bureaucratic performa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9), "Revisiting the Administrative Presidency: Policy, Patronage, and Administrative Competence",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9(1)
- Moe, Terry (1985), The Politicized Presidency, in *The New Direction in American Politics*, eds John E. Chubb and Paul E. Peterso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_____ (1985), "Control and Feedback in Economic Regulation: The Case of the NLRB", *APSR* (Vol.79), pp.1094-1116.
- _____ (1989), The Politics of Bureaucratic Structure, in *Can The Government Govern?*, eds John E. Chubb and Paul E. Peterso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Nathan, Richard P.(1975), *The Plot that failed: Nixon and the Administrative Presidency*, New York: Wiley
- _____ (1983), *The Administrative Presidency*, New York: Wiley
- _____ (1985), Political Administration is Legitimate, in *The Reagan Presidency and the Governing of America*, eds Lester M. Salaman & Michael S. Lund (Washington,D.C.: Urban Institute Press)

Abstract

Study on the Appointment and Tenure of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Dong-yul Kim · Sang-buhm Hahn

For over 60 years, from May 1950 to April 2010,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had 200 members on the committee. What is the decisive factor for appointment and length of service of members according to the president who appointed them? How does institutional change affect the duration and length of appointment of the committee members? Which factors affect members' tenure? This paper used institutional analysis,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and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for survival analysi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rough this analysis,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president's hometown and that of Monetary Policy Committee members, and the patronage concern of the president is reflected in some of the attributes. In addition, the institutional change by the sixth revision of the Bank of Korea in December 1997 significantly affected the tenure of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members. Since 1998, appointment and tenure of the members was prolonged significantl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e outgoing administration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s ratio of 65%, significantly increased to 89%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Moreover, members from a professorial-background, with a Central Bank recommendation, and from the Cholla region had significantly longer tenure, but the tenure of members from a political-background was significantly shorter in comparison.

【Key words: Monetary Policy Committee, tenure, survival analysis】